

XIV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1. 목 적 / 189
 2. 연 혁 / 189
 3. 사업 개요 / 194
 4. 각 기관의 역할 / 208
 5. 예 산 / 227
 6.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 234
- [붙임 1]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현황(60개소) / 240
- [붙임 2] 아동보호전문기관 관할지역 현황 / 244

1. 목 적



-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 도모

2. 연 혁



-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주요 제·개정 내용
 - 아동학대 개념의 명확화, 긴급전화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근거, 아동학대 신고 의무 등 규정(2000)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2002, 2004, 2005, 2006, 2007, 2012, 2014, 2016)
 - * (2016)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입양기관 종사자 추가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의무화(2005)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세부 규정 마련(2011)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방식을 지정에서 위탁으로 변경(2008)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구분 및 업무범위 정립(2008)
 - 시·도 및 시·군·구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조항 명시(2008)
 -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배치 의무화 및 자격 기준 명확화(2008)
 - 신고의무자 신고불이행 시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2012), 부과금액 최대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2013) 및 부과금액 최대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2014)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권한 및 업무수행 방해 금지 구체적 명시(2012)
 - 아동학대예방 홍보영상 제작·배포·송출(2012)
 - 아동학대예방의 날, 아동학대 예방주간 지정(2012)
 -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2014)
 - 아동학대행위자 친권제한·정지(2014)
 - 아동학대행위자 중 아동학대치사, 중상해, 상습범, 신고의무자가 학대 시 가중처벌(2014)

- 신고의무자 교육 의무기관 지정(2015)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복지시설 포함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근거 마련(2015)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14.1.28. 공포, '14.9.29. 시행)
 - 올바른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근거 마련
 - 경찰관이 아동학대 의심사건을 발견했을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
 - 아동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아동 인수를 거부할 경우, 1천만원의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피해아동에 대한 취학지원 및 사생활 보호 근거 마련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 및 운영을 10년간 제한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했을 경우, 기관장에게 해임의무 부과, 불이행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취업예정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의무 부과,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주요내용('14.1.28. 공포, '14.9.29 시행)
 - ※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아동복지법의 신고의무제도, 신고의무자직군, 신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행위자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 등 사법처리 절차에 대한 근거조항이 특례법으로 이관되었음
 -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범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 아동학대중상해 및 상습 아동학대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검사의 친권상실 청구를 의무화
 -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 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24개 직군으로 확대,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 아동학대 현장출동시 응급조치 후 학대행위자에 대한 친권의 제한·정지 등 임시조치 근거규정 마련하고, 가정법원이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지정토록 하여 법정대리인의 공백 해소
 - 가정내 발생하는 일회적이고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보호처분 실시
 - ※ 보호처분의 내용 : 접근행위 제한, 전기통신 접근행위 제한, 친권·후견인 권한 행사 제한·정지, 사회봉사·수감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가정법원에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청구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15.3.27. 공포, '15.9.28 시행)
 - 보호자에게 아동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시
 - 아동보호전문기관 장의 신분조회 등 조치 범위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발급 포함
 -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임을 고지할 수 있고,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됨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15.10.6. 공포, '15.10.6. 시행)
 - 아동보호전문기관 피해아동, 보호자,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권한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을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장교육 의무 대상기관에 종합병원과 아동복지시설 추가
 - 과태료 부과기준 항목추가(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장교육 미실시, 피해아동 응급조치를 위한 피해아동 인수 거부,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직원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미실시,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직원 해임 미실시)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16.5.29. 공포, '16.11.30 시행)
 -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해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입양기관 직군 종사자 신고의무자 추가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학대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하도록 신고기한 명확화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 신고자 비밀엄수의무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조정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게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되고, 위반 시 형사처벌 하는 규정을 신설
-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피해아동보호를 위해서 피해아동이 부모를 직접 고소할 수 있도록 특례 마련
- 피해아동과 합의가 있어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이 가해자인 부모와 함께 있길 원하더라도 분리보호 할 수 있도록 함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16.3.23. 공포, '16.9.23 시행)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안됨
-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명칭을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으로 변경
-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함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아동 상담·조사를 위한 진술녹화실 설치·운영 추가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복지시설 포함
- 학대피해아동쉼터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
-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적용시점을 특례법 시행 이후인 2014년 9월 29일 이후 행해진 범죄로 명확히 함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16.9.22. 공포, '16.9.23. 시행)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구체화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자격기준 일부 완화

● 아동학대 신고전화 운영

- 아동학대신고전화(국번없이 1391) 운영(2000)
- 기존 아동학대신고전화(1391)를 보건복지콜센터 긴급지원전화(129)로 통합(2006)
- 아동학대신고전화를 129에서 분리하여 독자적인 1577-1391 운영(2006)
- 아동학대신고전화를 범죄신고전화 112로 통합(2014.9.29)
- ※ 아동학대 신고접수의 정확성·신속성 제고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 등 17개소 설치(2000)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2001)
-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등 2개소 설치(2003)
-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 등 18개소 설치(2004)
-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2005)
-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등 4개소 설치(2006)
-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2007)
- 경기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2009)
-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2012)
- 대구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미추홀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2013)
- 충청남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2014)
-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2015)
- 인천미추홀아동보호전문기관 폐소(2015)
- 대구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2016)

※ (아동보호전문기관 명칭) 2000년 국가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시작할 때는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사용하였으나 피해아동 낙인, 행위자 저항 심화 및 피해의식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2006년부터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변경

- ※ (지정제에서 위탁제로 변경) 아동복지법시행령 개정('05.11)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승인·취소권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08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방식이 지정에서 위탁으로 변경
- '08년 이전의 지정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체결 필요(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방식은 지정방식에서 위탁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모 또는 현재 기관과의 수의계약 모두 가능하나 향후 위탁기간 만료 시점에서는 공모를 통해 위탁계약 체결할 것)
-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위탁 지정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 18호서식 참조)
- 시·도 또는 시·군·구가 기존 수탁법인에게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계속 위탁하는 경우에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위탁 가능
- ※ 아동학대예방사업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 지침」에 별도 기재
- ※ '16년 11월 현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59개소 운영 중(상세 현황 붙임 1 참고)

3. 사업 개요



가.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 정의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보호가 필요한 만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개입 및 조치
 - ※ 방임에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포함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의 피해아동은 아동학대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의미
-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함
 -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 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 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하.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나.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의 정의

-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제8호)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의 피해아동은 아동학대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의미
-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함(「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

다.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Physical Abuse)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정서학대(Emotional Abuse)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성학대(Sexual Abuse)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방임(Neglect) 및 유기(Abandonment)
 - 방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반복적인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이러한 방임에는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등이 있음
 - (물리적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을 가정 내에 두고 가출한 경우 등
 - (교육적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특별한 교육적 욕구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

- ※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을 의미함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
- ※ 무단결석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경우(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제1항)
-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장애 아동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 등
- 유기 :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방임에 포함)

라. 아동학대 신고의무

-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함
 - ※ 아동학대 의심 상황의 판단은 서식13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아동학대의심 체크리스트” 활용
- 신고의무자(舊 아동복지법 제25조 제2항*)(「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14.9.29)됨에 따라 신고의무자 법적 근거 변경
 - (제1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제2호)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
 - (제3호)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제4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제5호)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제6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제7호)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제8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제9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제10호)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 (제1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제12호)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제13호)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 (제15호)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제16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제17호)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제18호)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제19호) 「청소년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제20호)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 (제21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제22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제23호)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 (제24호)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
 - (제25호)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그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이 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신고 의무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제2호, '14년 9월 29일 이후 500만원 적용)

-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됨(「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3항)
-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2조제2항)
 -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아동복지 관련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자가 신고인의 신원을 노출할 경우, 형법 제127조(공무상의 비밀 누설)·아동복지법 제65조(비밀 유지의 의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 위반죄) 제항 등에 따라 처벌
- 아동학대 신고포상 등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공개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신고인의 동의를 얻을 것

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법 제26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1시간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야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교육 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http://korea1391.go.kr>)에서 제작한 표준교육자료를 적극 활용
- (의무교육)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기관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쉼터는 제외)
 - ※ 상기기관에 소속된 신고의무자 이외의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대상은 아니나 교육자료 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http://112cyber.kohi.or.kr>)의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과정을 통해 교육실시 필요

- (교육방법) 교육교재(PPT등) 활용 전달교육 또는 동영상 시청 등으로 직장교육 실시
 - 교재 또는 동영상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korea1391.go.kr>) / 정보 / 교육자료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
- (교육결과 제출) 관계 행정기관(시군구청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서식11호에 따라 교육 실시 결과를 확인하고 서식12호에 따라 교육실시 결과를 매년 1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로 제출
 - ※ 의무교육대상인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 유치원, 학교만 해당
- (과태료)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바. 아동학대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요 내용>

- (부과주체) 신고의무자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부과대상)
 -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되었음에도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 (대상기간) 최초 아동학대 인지 가능시점부터 아동학대 신고접수일까지의 기간에서 신고 의무 이행여부를 판단
- (부과절차) 의견청취, 이의제기, 과태료 부과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 및 행정절차법령 준용

□ 과태료 부과 주체

- 신고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 사전통지 및 과태료 부과처분은 아동(학대예방) 담당부서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조직구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 대상

- (부과대상사건의 범위) 신고의무자 직근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¹⁾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특히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사실이 인정되어 형의 선고(유예포함) 또는 보호처분(감호위탁,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이 확정된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보다 철저히 시행
- (제외대상) 고의·과실이 없거나, 정당한 이유로 신고의무 위반이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경우,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²⁾
- (불이행 여부 적용기간) 아동학대 최초 인지가능시점부터 신고일까지의 범위에서 이행 여부를 판단하되, 최초 인지가능시점은 현장조사 결과(피해아동 및 주변인 상담 등)에 따라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출한 의견 등을 참고하여 학대 발생 관할 시·군·구가 결정
- 단, 최초 인지가능 시점이 아동복지법상 과태료 신설('12.8.5) 이전인 경우 '12.8.5.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 내에서 불이행 여부 판단³⁾

□ 과태료 산정기준

- (기준금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과태료 기준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63조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단, 불이행 행위가 '13.1.24~'14.9.28.에 발생한 경우	150만원	300만원	300만원
단, 불이행 행위가 '12.8.4~'13.1.23.에 발생한 경우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단, 불이행 행위가 '12.8.3. 이전에 발생한 경우	미부과	미부과	미부과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전처분 통지서를 발부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

-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법성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신장애) ① 심신(心神)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능력이 미약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한다.
 ③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 질서위반행위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 (감액대상)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1/2범위에서 감액 가능⁴⁾⁵⁾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6)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제3급 장애인
-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급~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등

- (증액대상)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2의 범위에서 증액하되, 상한액(500만원) 초과 불가⁶⁾
- (부과금액) 과태료 납부시기에 따라 산정금액(기준금액에 감액 또는 증액을 반영한 금액)의 80% 또는 100% 부과⁷⁾

-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 별표1.** [일반기준]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과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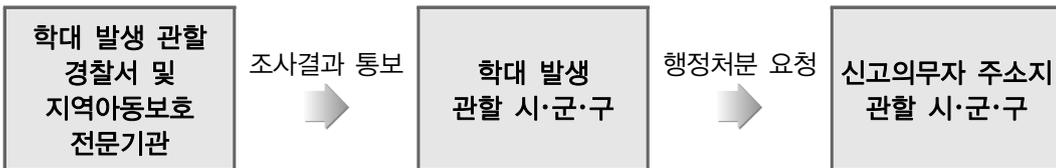
②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 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 별표1.** [일반기준]다.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려 경우에도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과태료 부과 처분서를 받고 납부하는 경우	산정금액×100%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하는 경우	산정금액×80%

□ 과태료 부과절차

- (조사결과통보) 경찰서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발생 관할 시·군·구에 조사 결과를 통보 할 때, 조사대상 신고의무자의 조사 내용(아동학대 사건인지 여부 등), 사법처리 진행 상황(경찰조사, 검찰송치, 법원재판 진행 등)을 포함하여 제출
- (행정처분 요청) 학대 발생 관할 시·군·구는 경찰서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결과 통보서를 참고하여(필요할 경우 자체조사 또는 경찰협조를 얻어 보강조사 실시) 아동 학대범죄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 되는 신고의무자에 대해서 신고의무자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서식 1에 따라 행정 처분 요청
 - 특히 형의 선고(유예포함) 또는 보호 처분(감호위탁,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이 확정된 아동학대 사건에서 보다 철저히 관리
 - 과태료 부과 시점에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그 진행사항에 대한 정보(확정 판결문 등)도 함께 알려줄 것
 - ※ (확정판결문 요청) 학대 발생 관할 시·군·구는 사건 관할 검찰청 또는 법원에 아동학대 사건의 확정판결 결과를 과태료 부과 목적임을 명시하여 공문으로 요청⁸⁾
 - ※ 판결문 요청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할 때의 사건번호를 기재 요망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자료제공의 요청)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신고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는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서식2 및 서식3)
 - ※ 반드시 문서로서 통지
 - ※ 제출된 의견이 타당한 경우 처분 취소 또는 처분내용 변경
 -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심사례와 관련해 현장출동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에 한해 통보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 신고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이후 과태료 부과 처분(서식4)
 - 과태료 부과 시점에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그 진행절차가 종료된 후 그 결과를 고려하여 처분을 진행할 것
 - ※ 반드시 문서로서 통지

 - (이의제기)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60일 이내 서면으로 신청
 -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통보 하되,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하거나 행정청이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 하는 경우는 제외

 - (기타) 이의제기에 따른 재판절차 등 아동복지법과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행정서식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 및 행정절차법령에 따름
- 신고의무 불이행 외에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도 동 과태료 부과지침을 준용할 것
-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 협조사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 각 부처 소관 신고의무자 단체에 동 지침 안내
 - (시·도) 관할 시·군·구에 동 지침 안내

- (신고불이행 신고의무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 아동학대 사건 재판결과 모니터링 철저, 사전통지 및 당사자 의견제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절차 준수 등
 - ※ 학대 발생 시·군·구는 과태료 처분 요청을 받은 지 2개월 이내에 신고의무자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행정 처분을 요청하고, 신고의무자 거주지 관할 시·군·구는 행정처분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처분 사전통지를 실시할 것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내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요령 및 과태료 관련 법령·지침 교육 협조

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 활성화 및 지역간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운영(아동복지법 제45조)
 -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들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아동복지법 제45조 제2항)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음(아동복지법 제45조 제3항)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 해당(시행 '16.9.23.)
 - ※ 사회복지시설 포함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2017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조

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위탁계약 체결

- '08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지정방식이 위탁방식으로 변경됨과 동시에, 이전에 지정된 기관은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인정하는 경과 규정이 마련

※ 아동복지법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①..... 아동 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예방협회 등의 비영리법인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제3조 ②(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지정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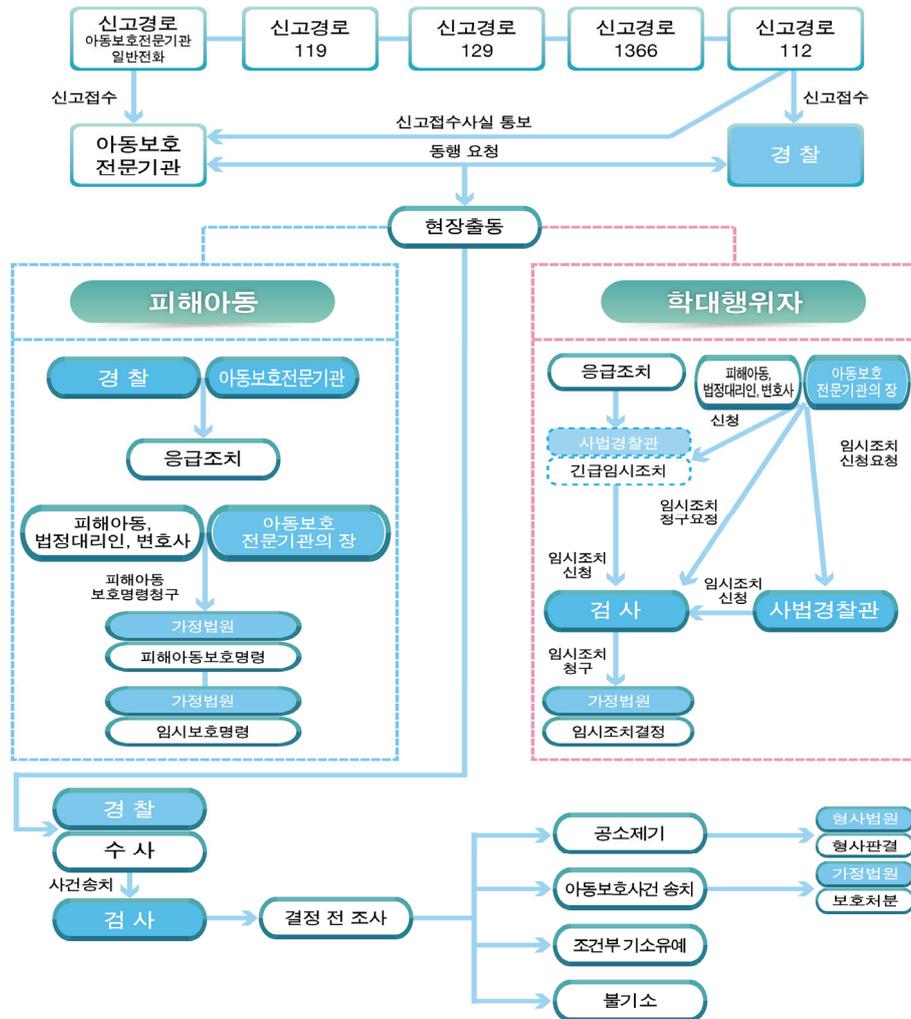
- (위탁계약 방식)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지정방식에서 위탁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해 현재 지정된 기관과의 수의계약 또는 공모 모두 가능하고 향후 위탁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는 공모를 통해 위탁계약 체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기존 수탁법인에게 계속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위탁 가능함

※ 공모 절차 및 응모 기준 등은 사회복지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⁹⁾ 준용

- 9)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1.5>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

자. 아동학대 사건 업무 처리 흐름도
(‘14.9.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4. 각 기관의 역할



가. 행정기관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관련 법·제도 마련 및 개선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지원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 및 자격 관리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 신고의무자·아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인권 교육을 위한 교육 자료 제작
- 아동학대 예방 홍보영상 제작, 배포, 송출
- ‘아동학대예방의 날(11월19일)’ 및 아동학대예방주간 행사 및 홍보 실시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 실시

[법무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련한 법·제도·정책 마련 및 개선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법 교육
-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및 행위자 교정·교화 지원체계 마련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지원

[여성가족부]

- 가정폭력예방과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가정폭력예방과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내 피해아동 보호지원
-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성매매피해시설상담소 종사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청소년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신고의무자 교육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korea1391.go.kr>) 정보실내 게시된 표준교육자료(전단지, PPT, 동영상) 적극 활용하여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료기관 등에서 직장내 자체교육으로 대체 가능

[교육부]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과과정 포함,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지원
 - 초·중·고 교과과정 포함 및 아동학대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초·중등학교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학원강사에 대한 신고의무자 교육
 -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 정보실내 게시된 표준교육자료(전단지, PPT, 동영상) 적극 활용하여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료기관 등에서 직장내 자체교육으로 대체 가능
- 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 및 위협에 대한 예방 협조
 - 피해아동의 입학, 전학 등의 신속한 조치와 편의도모(아동복지법 제29조 제5항)
 -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관련 정보 비밀유지
- 보육·교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 학대발생 보육·교육시설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행정징계

[시·도]

- 시·군·구의 피해아동 보호조치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시정조치
 - 피해아동 보호조치는 원칙적으로 시·군·구에서 담당하되, 시·군·구의 조치사항이 미비할 경우, 시·도에서 시·군·구에 시정조치 요청 또는 직접 시정조치 시행 가능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업무지도와 감독
 -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경우 위탁계약 체결
 -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군·구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나 조례에 의해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통합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음(아동복지법 제45조 제2항, 제3항)
 - ※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위촉장 발급 시 기재사항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함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위촉기간 :
- 내용 : 귀하를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전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위촉장 발급기관장 명의 : ○○시·도지사(시·군·구 설치 기관의 경우 ○○시·군·구청장)
 - 아동권리과4002(2015.6.22.)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안내 참고
- ※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조사원증 교부
 - 공무원증 규칙(행정안전부령 제24호)의 규격 및 서식을 준용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에게 아동학대조사원증을 발급 및 교부해야 함
- ※ 기재사항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함
 - < 앞쪽 > 성명 및 사진
발급기관명
 - < 뒷쪽 > 소속기관명: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위: 관장/상담원
발급기관장 명의: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 및 긴급생계지원 실시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 및 제9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필요한 무국적 및 외국국적, 불법체류 상태인 피해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 17조에 의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장애가 있거나 의심되는 피해아동의 경우 아동의 특성에 맞는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 관할 지역 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아동이라도 필요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 ※ 학대로 인해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15조의 보호조치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사안에 따라 적의 적용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 보호 필요(우선적용원칙 없음)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4항(피해아동보호명령)에 따른 보호위탁은 집행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 입소시설 결정 가능함(「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1항)
-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 및 확충
 - 장애아동 및 성학대피해아동 등 다양한 유형으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시설을 지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 필요

- 학대행위자의 알코올 문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아동의 신변이 위협받게 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행위자가 신속히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지원해야 함
-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교육훈련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아동학대 발생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및 개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시 동행요청에 협조
- 아동학대가 발생한 아동복지시설 및 교육훈련시설,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조치
- 법원에 아동학대행위자인 친권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 청구
- 관내 신고의무자에 대한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연간 1시간 이상 실시
 -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 정보실내 등재된 표준교육자료(전단지, PPT, 동영상) 적극 활용하여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료기관 등에서 직장내 자체교육으로 대체 가능
 - ※ 특히, 아동복지전담공무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 포함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 ‘아동학대예방의 날(11.19)’ 및 아동학대예방주간 행사 및 홍보 실시(아동복지법 제23조)
- 분기 1회 이상 지역신문, 유선방송 및 시정홍보 전광판, 리플렛, 홍보물품 배포 등을 활용하여 아동학대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지역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등을 적극 실시

[시·군·구]

- 친권 행사 제한 또는 정지된 피해아동의 임시후견인 역할 수행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업무지도와 감독
 -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경우 위탁계약 체결
 -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군·구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나 조례에 의해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통합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음(아동복지법 제45조 제2항, 제3항)
 - ※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위촉장 발급 시 기재사항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함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위촉기간 :
 - 내용 : 귀하를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전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위촉장 발급기관장 명의 : ○○시·도지사(시·군·구 설치 기관의 경우 ○○시·군·구청장)
 - 아동권리과-4002(2015.6.22.)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안내 참고
- ※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조사원증 교부
 - 공무원증 규칙(행정안전부령 제24호)의 규격 및 서식을 준용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에게 아동학대 조사원증을 발급 및 교부해야 함
- ※ 기재사항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함
 - < 앞쪽 > 성명 및 사진
발급기관명
 - < 뒷쪽 > 소속기관명: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위: 관장/상담원
발급기관장 명의: ○○시·도지사(○○시·군·구청장)
- 「아동복지법」 제22조의2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를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열람 및 발급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의 열람 및 발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여부의 확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열람 및 발급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분조회를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요청 시, 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자료에 해당되므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할 것
-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 및 긴급생계지원 실시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 및 제9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필요한 무국적 및 외국국적 피해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7조에 의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장애가 있는 피해아동의 경우 아동의 특성에 맞는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 관할 지역 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아동이라도 필요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 ※ 학대로 인해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15조의 보호조치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사안에 따라 적의 적용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 보호 필요(우선적응원칙 없음)
 - ※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아동복지시설장, 아동보호전문기관장, 학대피해아동쉼터 원장은 통장개설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9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법원 후견인으로 지정받아야 함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4항(피해아동보호명령)에 따른 보호위탁은 집행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 입소시설 결정 가능함(동법 제50조제1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응급조치로 보호시설로 인도된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대상아동 귀가조치
 - 보호자의 귀가 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부터 소견서를 제출받아 아동의 귀가 조치 여부를 판단
 - 해당 아동의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 입소 사유가 아동학대인 경우에는 귀가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초 피해아동의 가정위탁 또는 시설 입소를 의뢰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소견서를 제출받아 아동의 귀가 조치 여부를 판단
 -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 입소 사유가 아동학대인 아동에 대한 보호유형이 변경(시설 간 전원, 가정위탁에서 아동복지시설 입소로 변경, 아동복지시설에서 가정위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초 피해아동의 가정위탁 또는 시설 입소를 의뢰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도 소견서를 제출받아 보호유형 변경 여부를 판단
 -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 및 확충
 - 장애아동 및 성학대피해아동 등 다양한 유형으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시설을 지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 필요
 - 학대행위자의 알코올 문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아동의 신변이 위협받게 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 타기관(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센터, 알코올상담센터 등)과 연계하여 행위자가 신속히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지원해야 함

-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교육훈련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아동학대 발생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및 개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시 동행요청에 협조
- 아동학대가 발생한 아동복지시설 및 교육훈련시설,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조치
- 법원에 아동학대행위자인 친권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 청구
- 관내 신고의무자에 대한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을 연간 1시간 이상 실시
 -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korea1391.go.kr>) 정보실내 등재된 표준교육자료(전단지, PPT, 동영상) 적극 활용하여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료기관 등에서 직장내 자체교육으로 대체 가능
 - ※ 특히, 아동복지전담공무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 포함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현장조사 시 동행요청에 협조하는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보호조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특히,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이 이용·생활하는 모든 시설)내 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아동·보육 담당 부서에서 반드시 동행 (감사원 지적사항)
-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 아동학대가 발생한 아동복지시설,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개선, 사업의 정지, 위탁취소, 시설장 교체 및 시설폐쇄(아동복지법 제56조)
 -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의 처벌을 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조치(자격취소 등)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시 유의사항>

- 지자체는 사법기관의 아동학대 관련 처벌 결정 및 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사례의 경중 등을 고려한 후 행정처분 조치여부 결정
- 행정처분 전 내용·이유 등 처분요지 및 이에 대한 의견제출이 가능함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당사자 의견반영 절차 마련

- 법원에 아동학대행위자인 친권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 청구(아동복지법 제18조)
- 후견인이 아동학대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 법원에 후견인 변경 신청(아동복지법 제19조)
-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보호조치를 진행
 - 특히, 부모로부터 격리보호가 필요한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보호조치 중인 쉼터 등의 주소지 시·군·구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선정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 학대피해아동은 학대행위자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쉼터 등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지 못하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실제거주지인 쉼터·공동생활가정 등의 소재지 시·군·구청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접수
 - 학대행위자인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이 되어 있더라도 학대피해아동은 별도 가구로 판단하고 그 부모는 부양의무자로 처리해야 함
 - ※ 학대피해아동이 부양의무자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여 아동 공동생활가정(쉼터 등)에서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로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함(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71쪽)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통보한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 아동학대 신고의무 불이행 및 긴급입시조치 불이행, 보호처분 불이행, 보호처분에 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 요구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 분기 1회 이상 지역신문, 유선방송 및 시정홍보 전광판, 리플렛, 홍보물품 배포 등을 활용하여 아동학대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지역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등을 적극 실시

(읍·면·동)

- 관할 지역 내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해 112 신고
 - 학대피해아동 조기발견을 위해 지역내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보건소, 통·반장 등을 통한 아동학대 신고 협조체계 구축
- 「아동복지법」 제22조의2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를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열람 및 발급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의 열람 및 발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여부의 확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열람 및 발급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분조회를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요청 시, 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자료에 해당되므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할 것
-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현장조사 시 동행요청에 협조하는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보호조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나. 경 찰

- 피해아동 보호조치 등 원활한 사례개입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아동보호전문기관 개입사례 중 고소고발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진행과정 정보공유에 대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
 - 경찰에서 피해아동 대상 진술녹화 진행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 상담원 동석하도록 하여, 정보공유에 적극 협조
 - 경찰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현장조사 동행하여, 아동학대 발생 사항을 직접 확인한 경우 별도의 수사의뢰 없이 경찰에서 사건 진행
- 아동학대 신고접수(112) 및 직무상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반드시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 및 사례내용 공유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사례에 대해 현장조사 시 동행 협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은 현장출동 동행을 상호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수사 과정에서 학대행위자의 위협으로부터 피해아동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신변안전 확보
- 응급조치를 요하는 아동학대 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조치 의뢰
- 아동학대범죄 행위 제지 및 아동학대행위자 격리, 피해아동을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등 응급조치 및 응급조치결과보고서 작성
- 단독 응급조치로 피해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할 경우 지자체에 해당 사항 통보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결정·집행 및 임시조치 신청
- 아동학대사건송치시 아동보호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 개진
- 피해아동에게 필요한 절차 및 지원서비스(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안내
-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준수여부를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 요청
- 아동학대의심사례 중 단독으로 조사한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국가아동학대정보 시스템에 입력
- 오인·허위신고로 현장 확인된 경우, 신고접수 후 24시간 이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확인 사실 통보

다. 검 찰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청구 및 수사·처분방향 결정
- 아동학대사건 수사 시 수사기관에 필요한 자료 요청 및 의견청취
- 아동학대행위자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대한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 청구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상담·치료·교육 명령
- 피해아동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아동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법원에 신청하고 성폭력·아동학대 전담검사제도, 진술조력인제도 및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아동 보호
- 수사시 아동학대행위자의 위협으로부터 피해아동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의 신변안전 확보

라. 의료기관

- 의료행위 시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해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신고전화 112)
 - 의료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로 그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 응급조치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따라 의료기관으로 인도 및 치료위탁된 아동에 대한 치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47조)
-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에 따라 의료기관으로 치료 위탁된 행위자에 대한 치료
- 신고의무자군에 대한 신고의무자 교육
 -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korea1391.go.kr>) 정보실내 등재된 표준교육자료(전단지, PPT, 동영상) 적극 활용하여 어린이집 등에서 직장내 자체교육으로 대체 가능
- 의료기관 내에 소아과, 소아정신과, 외과, 내과, 산부인과, 의료사회사업가 등으로 구성된 학대피해아동 보호팀을 구성·운영
- 아동학대 판정을 위한 피해아동,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의학적 진단, 소견·증언 진술 및 피해아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 응급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치료서비스 지원

마. 보육 및 교육기관

- 아동학대의심사례 조기 발견 및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신고전화 112)
 - 초·중등학교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학원강사,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로 그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및 경찰이 보육 및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조사 (아동상담)를 실시할 경우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

- 피해아동과 부모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및 협조
- 피해아동의 보육 및 교육기관 생활, 가족력 등 관련 자료 제공
- 피해아동에 대한 학교사회사업 서비스 제공
- 아동, 부모 및 교사 대상의 아동학대예방 홍보 및 아동의 권리와 학대예방 등에 관한 교육 실시
 - 매년 아동에 대해 성폭력 및 아동학대예방교육을 포함한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함(아동복지법 제31조)
 -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결과를 관할 교육감에게 매년 1회 보고(아동복지법 제31조)
 -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복지법 제75조 제3호)
- 부모로부터 분리보호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협력 지원
 - 피해아동의 입학, 전학 등의 신속한 조치와 편의도모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동법시행령 제1조의3 규정에 근거하여 아동보호 전문기관장이 피해아동의 비밀전학을 요청할 경우 이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부모로부터 분리보호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협력 지원
 - 피해아동의 입학, 전학 등의 신속한 조치와 편의도모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동법시행령 제1조의3 규정에 근거하여 아동보호 전문기관장이 피해아동의 비밀전학을 요청할 경우 이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 「아동복지법」 제29조 제5항 규정에 근거하여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편입학 포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규정에 근거하여 취학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출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보호를 위한 아동관련 정보 비밀유지
 -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규정에 근거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취학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을 보호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바. 법 원

-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 원칙’에 따른 사법적 소송 진행
- 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 피해아동명령에 따라 시설로 아동보호할 경우 아동이 실제 거주하는 주소 및 시설 명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결정,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의 상담·교육 위탁시 이행 사항 확인 및 수행기관의 의견 청취를 통한 성행교정 상황 모니터링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결정 및 그 이행상황 모니터링
- 피해아동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판결, 보호처분 결정, 친권의 상실 선고·후견인 변경 심판, 후견인의 지정 등
- 재판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아동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의 신변 안전을 확보 하고 피해자 지원제도 활용
- 성학대로 고소·고발된 사례에 대하여 증인으로 소환된 범죄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판 조서에 해당 증인의 인적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하여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증인의 신변을 보호 가능(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1조 참조)
- 법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범죄신고자 등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과정에서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에게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요청가능(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참조)
- 증인신문시 증인으로부터 법정 외 제 3의 장소에서 신문을 받거나 비디오 등 중계 장치 또는 차폐시설을 이용한 신문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받은 경우 이를 신중히 고려 (형사소송법 제165조, 제165조의 2)

사.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운영근거 : 아동복지법 제45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업무 지원
- 아동학대예방 관련 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등 개발
- 아동학대예방사업 관련 업무수행지침 및 보고서 발간

- 아동학대예방사업 정책 개발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직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교육
- 아동학대 예방 관련 홍보 및 교육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
- 아동학대 관련 통계 관리 및 분석
-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 해외발생아동학대사례 관련 국제협력 지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수행
 -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은 아동학대 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2항)
 -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현장 조사 거부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함(「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제1항)
- 시설 내 학대의 경우는 필요 시 지자체에 현장조사 동행을 요청(서식 5)
-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내용을 토대로 아동학대 여부 판단
- 아동학대범죄 행위 제지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격리하는 응급조치
- 피해아동을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응급조치 및 상담·치료 등의 서비스 제공
 - ※ 아동학대특례법 시행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에 대해 응급조치를 실시할 경우, 지체없이 시설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하고,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해야함

- ※ 원활한 아동 입소조치 및 지속적인 아동 관리를 위하여 시설 소재지 및 아동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아동 입소 내용 안내 및 응급조치결과보고서 송부해야함(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응급조치결과보고서 작성 시에 한함)
-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길 수 없으며, 다만 검사가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시까지 연장
- 사법경찰에게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청구요청
- 아동보호사건 송치 시 아동보호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 개진
- 임시조치, 조건부 기소유예, 보호처분 등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위탁 수행
-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
 - 행위자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 신청,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등
 - 진술조력인, 국선변호인 선정신청 지원 및 신뢰관계인 동석 등
 - 그 외 필요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 (아동복지법 제29조)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아동복지법 제29조의 2)
-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아동복지법 제28조)
-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 ※ 몇 개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묶어 통합적으로 사례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해서는 안되며 관할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별로 각각 고유의 사례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위원에 ‘협력 학대피해아동쉼터 원장’ 추가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 업무수행 결과 입력 및 보존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지역사회 자원 개발 및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피해아동의 기초생활보장급여 또는 의료급여 등 필요한 보호 및 양육조치 의뢰
-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행사 상실 청구 요청(아동복지법 제18조)

-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은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발견한 경우 지자체의 장 또는 검사에게 학대행위자인 친권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 청구를 요청
-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은 지자체의 장 또는 검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 직접 청구 가능
- 후견인이 아동학대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 법원에 후견인 변경 신청(아동복지법 제19조)
- 진술녹화실 운영
- 설치기준 : 16.5㎡ 이상으로 상담실, 심리검사 및 치료실, 자료실 또는 대기실 등을 설치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5)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행정사항)

- 관리규정 마련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등 기타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해야 함
 - 다만, 지정받는 법인 또는 시설이 별도의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하되, 아동복지법령 또는 관련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부분은 법령 또는 지침을 우선 적용해야 함
- 장부 등의 비치
 -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함
 - 기관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 재산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 기관운영일지
 - 기관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 예산서 및 결산서
 -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 보고서철 및 관계 관청과의 문서철
 - 신고·접수받은 아동학대 조사 및 상담기록, 건수 및 관련 서류
- 직원 채용 관련 사항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 직원은 아동복지법시행령 제43조의 별표7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 임용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7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중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서 개설·운영하는 별표 15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표 15의 교육과목 중 일부 과목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면제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 대학등에서 심리학과(복지심리학과 포함)를 졸업한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 다만, 아동학대전문상담원교육과정이 개설되기 전 결원 보충 등을 위하여 상담원을 사전에 배치할 경우 배치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함(아동학대전문상담원 교육 과정 수료 이후 아동학대사례담당자로 지정될 수 있음. 다만, 현장 출동 및 동행 조사 등의 업무는 수행할 수 있음)
-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43조의 별표7에 따른 상담원 자격 취득 이전(대학 졸업예정자 등)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아동학대사례담당자로 지정될 수 없음. 다만, 현장 출동 및 동행 조사 등의 업무는 수행할 수 있음.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은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거나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등 피해아동의 심리 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함
- 인사발령 시 상담경력이 있는 직원을 우선으로 배치하고, 관할 시·도(시·군·구)에 이력서 및 범죄경력, 성범죄자 전력,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사항 등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함
 -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장 변경 시 즉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보건복지부로 임면사항(자격기준 등 참고 자료 첨부) 보고해야 함
-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은 반드시 조사원증을 소지하고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수행해야 함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 업무처리 결과 입력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조사, 학대 판단, 심리치료, 가정방문 등 업무처리 결과를 업무수행 후 7일(휴무일 제외) 이내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할 것

[학대피해아동쉼터]

-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앞 부분의 ‘공동생활가정 운영’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름
- 주요기능
 -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심리치료, 집단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 교육 및 정서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이 분리보호 조치한 학대피해아동에 한하여 입소하는 특수 공동생활가정임
- 설치기준 : 전용면적 100㎡ 이상의 주택형 숙소로서 방 4개 이상으로 방 하나를 심리 치료실로 활용
 - ※ 2015.1.1. 이전에 이미 운영 중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예외적으로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나 향후 주택 이전 시에는 동 설치기준을 적용함

※ 아동용 방 2, 직원용 방 1, 심리치료실용 방 1개 이상으로 심리치료실용 방도 잠을 잘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평범한 가정 형태의 환경 제공이라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목적에 위반되므로 쉼터 내 사무실을 설치 할 수 없음

● 종사자 : 보육사 3명 이상, 심리치료전문인력 1명 이상 배치

※ 보육사 3명 중 1명이 원장 직무 수행

●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지정 절차

-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민간(비영리법인)이 설치한 공동생활가정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만 입소하도록 시·군·구청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특수공동생활가정임

- 따라서, 제반 행정절차는 일반공동생활가정 신고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학대 피해아동쉼터 지정 절차만 추가됨

- (기존 일반공동생활가정을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이 기존 공동생활가정의 신고수리 사항 중 신고조건을 변경 신고수리함. 즉, 기존 사회복지 시설 신고증을 ‘신고조건 :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함’으로 변경하여 교부

※ 「아동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설치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국비보조금으로 지자체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하여 비영리법인에 위탁한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 및 지정절차 없음

● 학대피해아동 입소 처리 요령

-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쉼터 소재지 시·군·구 아동뿐만 아니라 타지역 아동도 입소 가능함

※ 학대피해아동쉼터 소재지 시·군·구 관내 아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아동 입소 처리를 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도의 적극적 지도감독 필요(시설 소재지 시·군·구 아동만 입소하게 한다면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운영 실익 없음)

※ 피해아동이 지구대 등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전국 모든 시·군·구가 피해아동 입장에서 신속하고 긴밀하게 상호협력 필요

- (절차) 선 구두 요청, 피해아동 입소 후 공문 처리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 아동 발생지 관할 시·군·구에 ‘학대피해아동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 협조요청’ → 피해아동 발생지 관할 시·군·구가 쉼터 소재지 시·군·구에 ‘학대피해아동 학대피해 아동쉼터 입소 협조요청’ → 쉼터 소재지 시·군·구가 피해아동 입소 결정

- 학대피해아동 퇴소 처리 요령
 -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일반공동생활가정과 달리 일시보호 성격의 시설임
 - 학대피해아동은 쉼터에서 3~9개월 간 집중심리치료 및 생활지도를 받고 원가정복귀·가정위탁·일반공동생활가정 등으로 전원조치 필요
 - 다만, 학대 후유증이 심각하거나 문제행동이 심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계속 입소 가능
 - 쉼터 퇴소 시기와 퇴소 유형(원가정복귀·가정위탁·일반공동생활가정 등 전원)은 쉼터 원장과 당초 아동을 의뢰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서로 상의하여 피해아동 입장에서 최선을 선택
- 유의사항
 -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시설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나, 비공개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 거주자 대표(아동),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부모), 지역주민 대표 등은 선정하지 않도록 유의
 -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일시보호 성격의 시설이므로 재원 아동이 없는 경우라도 개소하여 운영중인 경우 개소일을 기준으로 예산 지원 가능

5. 예 산



가. 운영예산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국비(100%)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 국고보조사업 - 국비(50%) 및 지방비(50%)
 - 학대피해아동쉼터 : 국고보조사업 - 국비(40%) 및 지방비(60%)
- ※ 각 지자체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예산 이외에 별도로 지자체 자체사업을 추가 편성 가능

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예산확보 및 운용 권고안

1) 예산확보 권고안

- 인건비는 매년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기준을 준용하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회복지관,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권고
- 적정한 수의 직원 배치 권고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관할 면적(보다 정확히는 현장출동 시간), 관내 아동수, 관내 아동학대의심사례 건수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지역아동보호기관 별 업무량 편차가 적도록 필요 시 관할 구역을 재조정할 것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충실하게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관할 면적(보다 정확히는 현장출동 시간), 관내 아동수, 관내 아동학대의심사례 건 수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의 직원 배치 권고
- 특수근무수당 지원
 - 아동학대행위자의 폭력적 행위 등 상담원이 직면하게 되는 업무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특수근무수당 지원
- 상해보험료
 - 상담원 업무 수행 시 신변안전에 위협을 받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상담원을 위한 상해보험료 지원
- 야간·휴일 재택 당직비 지원
 - (당직비 단가) 시행일 2016. 1. 1.

평일 야간	주말 및 휴일
4만원 / 일	5만원 / 일

※ 단, 사례관리 기능만을 전담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는 평일 야간 2만원, 주말 및 휴일 3만원 지급

- 운영비·사업비 지원
 - 충실하게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를 위한 여비, 피해아동 검사비, 의료·심리치료비 등의 운영비·사업비 지원

●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배치

- 피해아동 후유증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를 위한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배치

※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임상심리사, 놀이치료사, 미술치료사, 심리상담사 등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가 가능한 인력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시행령 제42조 별표5>

2. 직원의 배치기준

- 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긴급전화의 운영과 법 제46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관의 장 1명,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 및 상담원 6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별표 7 제2호에 따른 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상담원을 겸할 수 있다.

2) 예산 운용 권고안

1]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유형	비목	세부항목
경상보조	인건비	<직원 보수> ※ '2016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사회복지관 인건비 기준 적용 권고 • 기본급 • 명절휴가비 • 시간외근무수당 • 가족수당 • 기타 사회복지관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 특수근무수당(위험업무수당) <고용주 부담금>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사회보험부담금
	운영비	• 여비 * 현장조사, 사후관리, 직무교육 이수 등 • 당직비 * 야간·휴일 재택당직 • 상해보험료 • 회의비 * 사례전문위원회, 자문회의 등 • 업무추진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 차량비 * 유류, 정비, 소모품, 차량임차료 등 • 시설장비유지비 * 직원 충원에 따른 각종 비품 구입 포함 • 임차료 * 사무공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 기타운영비 * 특근매식비(야근식대)
	사업비	• 피해아동 긴급생계비 등 부대비용 • 피해아동 의료비·심리치료비 * 검사비, 정신과치료비, 응급치료비, 입원치료 제경비(간병인비 포함), 심리치료비 (외부 심리상담소 활용 시) • 학대행위자 상담·교육비 * 외부 강사비, 외부 심리상담소 활용 시 • 피해아동의 가족 심리치료비 * 외부 심리상담소 활용 시
자본보조	사무공간 매입비	• 부동산 매입비 • 중개료, 등기료 등
	기자재·차량 구입비	• 기자재 설치비 * 사무용 가구, 업무용 비품, 사무공간 칸막이 공사, 심리치료실 설치, 심리치료 자재 등 • 업무용 차량 구입

2 학대피해아동쉼터

유형	비목	세부항목
경상보조	인건비	<p><직원 보수></p> <p>※ 「2016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사회복지생활시설 인건비 기준 적용 권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급 • 명절휴가비 • 시간외근무수당 • 가족수당 • 기타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p><고용주 부담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사회보험부담금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하교, 외래 진료, 업무협의, 직무교육 이수 등 • 상해보험료 • 수용비 및 수수료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 차량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류, 정비, 소모품 차량임차료 등 • 시설장비유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충원에 따른 각종 비품 구입 포함 • 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공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 회의비 • 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회비 • 기타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근매식비(야근식대) • 기타
	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비 등 부대비용 • 피해아동 의료비·심리치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비, 정신과치료비, 응급치료비, 입원치료 제경비(간병인비 포함), 심리치료비 (외부 심리상담소 활용 시) • 교육·정서지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험 등
자본보조	주택 매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매입비 • 중개료, 등기료 등
	기자재·차량 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자재 설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비품, 심리치료실 설치, 심리치료 자재 등 • 업무용 차량 구입

3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유형	목	세부항목(비목)
경상보조	인건비	<직원 보수> ※ 「2016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사회복지관 인건비 기준 적용 권고 • 기본급 • 명절휴가비 • 시간외근무수당 • 가족수당 • 기타 사회복지관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고용주 부담금>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사회보험부담금
	운영비	• 여비 * 직무교육, 지도점검, 업무협의를 등 • 상해보험료 • 회의비 * 자문회의, 관장회의 등 • 업무추진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 차량비 * 유류, 정비, 소모품 등 • 시설장비유지비 * 직원 충원용 및 생활용 각종 비품 구입 포함
	사업비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홈페이지 유지보수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직무교육·심리치료 • 정책연구 / 교육홍보 *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제작, 국민인식 개선 홍보물 제작 등 • 특별사업비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교부 용도에 한함

4 공통사항

- 인건비·운영비·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전용불가
- 다만, 특별히 필요한 예산소요가 있는 경우로서 설치 주체가 승인하는 경우 운영비 일부를 전용하여 사업비로 사용 가능
- 그 외에 인건비를 운영비·사업비로 전용, 운영비·사업비를 인건비로 전용, 사업비를 운영비로 전용 등은 모두 불가함
- ※ 운영비는 임차료로 사용 가능(학대피해아동쉼터 포함)
- ※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일반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지정하는 것이나 운영비의 사용이 다름에 따라 특성을 반영한 운영비 편성 필요

- 회계처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을 적용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치료비, 검사비는 분리보호 조치된 아동뿐 아니라 원가정보호 조치된 아동 등 모든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피해아동의 보호자에게도 사용가능
- ※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조건부기소유예, 보호처분에 따른 치료비, 검사비 비용으로도 사용가능

피해아동에 대한 정밀진단(MRI, CT) 및 심리검사 지침

◆ 정밀진단(MRI, CT) 검사

- ① 뇌손상이 심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② 1차 의료기관의 정밀진단 소견에 의해 얼굴 및 머리부위에 상처나 멍이 있고, 심하게 맞았다고 추정되는 신체학대 아동
- ③ 외상으로 뚜렷한 상처가 없는 아동일지라도 신체학대, 방임을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추정되는 아동
- ④ 기타 아동 :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지라도 피해아동에게 정밀진단(MRI, CT)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 가능

◆ 심리검사

- ① 대상연령 : 만 5세이상(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최소연령)
* 만 5세이하의 경우 놀이평가 진행 가능
- ② 대상의 학대유형 : 모든 학대유형이 해당됨. 성학대로 추정될 경우는 반드시 실시하도록 함
- ③ 대상의 학대정도 : 6개월 이상 학대가 지속된 경우, 학대의 빈도가 일주일에 2회 이상으로 잦은 경우, 학대정도가 심각한 경우
- ④ 대상의 특성 :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상의 피해아동의 특성을 기준으로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추정될 경우
- ⑤ 기타 :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지라도 피해아동의 성격·능력·심리행동적 특성의 내용과 정도를 알아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실시 가능

◆ 심리검사 종류

- ① 객관화 검사: KEDI-WISC(아동지능검사), 아동지능검사(KEDI-WISC, K-WISC-III, IV, WIPPSI, K-ABC 등) K-PIC(한국아동인성검사), MMPI(다면적인성검사) K-CBCL(아동문제행동검사), MBTI·MMTIC(아동성격 유형검사) 등
- ② 투사 검사 : Rorschach Test(아동인성검사 : 로샤검사), HTP(집·나무·사람검사), KFD(동적가족화), SCT(문장완성검사), CAT(아동주제통각검사) 등

◆ 심리검사를 통해 피해아동의 인성, 지능, 행동 등에 있어 학대후유증 정도를 진단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적인 치료 서비스 계획을 수립함

◆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행위자, 피해아동의 보호자 등에게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심리·정서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서비스 지원 모색

6.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1 취업제한 목적

- 아동학대관련범죄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아동을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고자 함

2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29조의4, 제29조의5

3 취업제한 대상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된 날로부터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의 시설 또는 기관의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가 제한됨

※ 법 시행일인 2014년 9월 29일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관련범죄에 적용(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날이 아닌 아동학대범죄가 행해진 날짜가 2014년 9월 29일 이후인 것에 한함).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 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은 개정 시행 이후인 2016년 9월 23일 이후인 것에 한함.

- (제1호)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제45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 (제2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제3호)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 (제4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제5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 (제6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 (제7호)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 (제8호)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 (제9호)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
 - (제10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 (제11호) 「정신보건법」 제3조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13조의2의 정신보건센터
 - (제12호)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
 - (제13호)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 (제14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은 청소년활동시설에 해당하여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해당함에 유의
 - (제15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제16호)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 (제17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 (제18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 (제19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 (제20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제21호)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 * 제21호는 법개정 시행 이후인 2016년 9월 23일 이후에 발생한 아동학대범죄에 한함
- 취업제한 대상은 상근직 직원뿐만 아니라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있는 모두를 포함. 즉, 특강 강사, 운전기사, 청소노동자, 사회복지무원 등 기관에서 노무를 제공하려 하거나 하고 있는 모두가 포함됨

구분	기관·시설 현황	비고
아동복지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 기관(드림스타트)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공동생활 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1호
가정폭력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단기 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2호
가족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한부모가족복지시설(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3호 4호 20호
성매매 및 성폭력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시설(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외국인 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 시설, 특별지원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 	5호 6호
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7호
교육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 학교(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 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학원, 교습소(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 * 학교교과교습학원 전체,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성인대상어학·통역·번역·성인고시를 교습과정으로 하지 않는 학원으로 하되 성인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은 제외, 교습소 전체 	8호 18호 19호
의료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 의사·조산사·간호사)에 한함 	9호
장애인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물 판매시설) 	10호
정신보건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병원,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센터 	11호
주택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관리사무소 * 경비업무 종사자에 한함 	12호
청소년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단체(「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 하는 단체 •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13호 14호

구분	기관·시설 현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청소년이용시설*(문화시설, 과학관, 체육시설, 평생교육기관,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회복지관)</u> * 「<u>청소년활동 진흥법</u>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문화시설(「<u>문화예술진흥법</u>」 제2조제1항제3호) : 공연장(종합공연장, 일반공연장, 소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시설(도서관, 문고), 지역문화복지시설(문화의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문화보급·전수시설(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종합시설 - 과학관(「<u>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호) - 평생교육기관(「<u>평생교육법</u>」 제2조제2호) * <u>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시설에 한함</u> - 자연휴양림(산림욕장 포함) (「<u>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u>」 제13조, 제14조 및 제20조) - 수목원(「<u>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호) - 사회복지관(「<u>사회복지사업법</u>」 제2조제5호) -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둔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u> 	1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청소년보호·재활센터</u> 	16호
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골프장, 골프연습장, 농구장, 당구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빙상장, 사격장, 수영장, 스키장, 썰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축구장, 탁구장, 테니스장, 핸드볼장 등</u> (「<u>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호) * <u>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시설에 한함</u> 	17호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위탁운영 법인</u> * <u>법인 산하의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 아니라 법인사무를 하는 사람에 한함</u> 	21호

5 취업자(예정자) 등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확인

● (전력 조회의무)

- (지자체장, 교육감, 교육장)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경찰서에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함

- (아동관련기관의 장)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경찰서에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함

* 기존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조회 권고

● (전력 조회절차) 지자체장, 교육감, 교육장 및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서식 6호)에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서면동의서(서식 7호)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신청함

- 경찰서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서식 8호)’에 취업제한대상자등 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함

*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으로 경찰서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6]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점검·확인

● (전력조회 점검·확인)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동 기관에 취업 중인 자를 대상으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교육감·교육장이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하여야 함

- (직접조회) 아동관련기관에 대해 방문 등을 통해 전력조회 이행여부 점검·확인

- (관계기관 조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교육감·교육장이 전력조회 대상자에 대해 직접 경찰서에 전력조회를 요청하여 운영 및 취업여부 점검·확인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교육감·교육장이 경찰서에 전력조회를 요청하여 점검·확인 시에는 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전력조회를 위한 필요한 경우 자료 요구 가능(제출사유, 제출일시, 제출 내용 등 명시 필요)

7] 법규 위반에 대한 조치

●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75조제2항)

●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아동학대범죄전력자에 대해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함(법 제29조의5제1항)

- 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아동학대범죄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 중인 경우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 하여야 함(법 제29조의5제2항)
-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아동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등록·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이를 요구할 수 있음(법 제29조의5제3항)

8] **점검·확인결과 공개**

- (공개기관) 보건복지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 (관계 중앙행정기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 (공개사항) 점검·확인 기간, 아동관련 기관 수 및 인원 수, 취업제한 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군·구명,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 대상자의 수, 취업제한 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조치계획 및 조치한 내용 (서식 9호, 10호 참조)
- (공개절차)
 -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점검 완료일로부터 50일 이내 작성 또는 취합) ⇒ 보건복지부 공개(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 (시·도 및 교육청) 시·도 및 교육청(점검 완료일로부터 40일 이내 작성 또는 취합) ⇒ 관계 중앙행정기관(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취합) ⇒ 보건복지부 공개(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 (시·군·구 및 교육청) 시·군·구 및 교육청(점검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작성 또는 취합) ⇒ 시·도 및 교육청(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취합) ⇒ 관계 중앙행정기관(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취합) ⇒ 보건복지부 공개(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 (공개기간) 점검·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12개월 동안 공개함
- (공개방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korea1391.go.kr>)를 통해 인터넷 공개
 - * (경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 정보 / 아동학대관련 점검 결과

[붙임 1]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현황(60개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보건복지부 설치)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59개소(지방자치단체 설치)

(2016. 11월 현재)

지역	기관명	운영기관	설치장소(홈페이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66길 19(역삼동) (http://korea1391.go.kr)
서울 (8)	서울특별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34길 124(수서동) (http://child.seoul.go.kr)
	서울특별시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립 아동상담치료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69길 106(장안동) http://www.dbnawoori.seoul.kr)
	서울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7가길 12, 2층(가양동, 시정헌빌딩) (http://www.gangseo.goodneighbors.kr/gngangseo)
	서울은평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210, 4층(응암동) (http://eunpyeong.goodneighbors.kr/gneunpyeong)
	서울영등포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27가길 5, 4층(대림동, 태안빌딩) (http://yongdungpo.goodneighbors.kr/gnyongdungpo)
	서울성북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3길 36, 1층(태운힐빌딩) (http://seongbuk.goodneighbors.kr/gnseongbuk)
	서울마포 아동보호전문기관	세이브더칠드런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46, 401호(신수동) (http://mapo.sc.or.kr)
	서울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32길 6, 5층(문정동) (http://gangdong.goodneighbors.kr/gngangdong)
부산 (4)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부산광역시 서구 까치고개로 183 (아미동2가) (http://adong.busan.go.kr)
	부산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사회사업재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506, 영플리젠시 903호 (http://dbchild.saem.or.k)
	부산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사회사업재단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268 화명대림타운상가 405, 406호 (http://dbchild.saem.or.kr)
	부산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법인 동성원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 141번길 11

지역	기관명	운영기관	설치장소(홈페이지)
대구 (3)	대구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재단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302, 2층(동인동3가) (http://www.dg1391.or.kr)
	대구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319, 2층(송현동) (http://ndaegu.goodneighbors.kr/gmndaegu)
	대구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SOS어린이마을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25길 12(산격동) (http://www.sosdb1391.or.kr)
인천 (3)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세이브더칠드런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899(주안동) (http://icchild.sc.or.kr)
	인천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883, 4층(부평동, 재현빌딩) (http://ninchon.goodneighbors.kr/gmninchon)
	인천남부아동보호 전문기관	홀트아동복지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904, 4층(간석동)
광주 (2)	광주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재단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216(쌍촌동) (http://www.cyber1391.or.kr)
	빛고를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법인 동명회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132 (http://www.bitabo.co.kr)
대전 (1)	대전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대전광역시 중구 어덕마을로 156(중촌동) (http://daejon.gni.kr)
울산 (1)	울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세이브더칠드런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3길 21(성안동) (http://www.ulsan.sc.or.kr/)
경기 (12)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225번길 20(영화동) (http://suwon.goodneighbors.kr/gnsuwon)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196 4층 (도림빌딩) (http://uijeongbu.goodneighbors.kr/gnuijeongbu)
	경기성남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06, 2층(태평동) (http://sungnam.goodneighbors.kr/gnsungnam)
	경기고양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557번길 11, 7층(행신동, 삼정프라자) (http://sungnam.goodneighbors.kr/gnsungnam)
	경기부천 아동보호전문기관	세이브더칠드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279 서호빌딩 4층 405호(중3동) (http://bucheon.sc.or.kr)
	경기화성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334, 4층(봉담읍, 송현빌딩) (http://hwaseong.goodneighbors.kr/gnhwaseong)
	경기남양주 아동보호전문기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248번길 39, 204호(금곡동, 다남빌딩) (http://www.nyj1391.or.kr)

지역	기관명	운영기관	설치장소(홈페이지)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세이브더칠드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12, 203호(고잔동, 슈마프라자) (http://ansan.sc.or.kr)
	경기용인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서로9 505호(구갈동) (http://yongin.goodneighbors.kr/gnyongin)
	경기시흥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83 2층(대야동) (http://siheung.goodneighbors.kr/gnsiheung)
	경기평택 아동보호전문기관	동방사회복지회	경기도 평택시 소사1길 33 동방평택복지타운(소사동)
	수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천로392번길 17(연무동)
강원 (4)	강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재단	강원도 춘천시 성심로47번길 35(후평1동) (http://www.1391.org)
	강원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재단	강원도 강릉시 솔울로 5번길 33, 2층(교통, 반트스포츠센터빌딩) (http://www.kd1391.or.kr)
	원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469번길 7(명륜동) (http://wonju.goodneighbors.kr/gnwonju)
	강원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강원도 동해시 부곡3길 20-9, 2,3층 (http://donghae.goodneighbors.kr/)
충북 (3)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202번길 66-1(울량동) (http://cheongju.goodneighbors.kr/gncheongju)
	충북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원주카톨릭 사회복지회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242, 4층(청전동, 제천시보건복지센터) (http://www.1391sos.kr)
	충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법인 명지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1길 19(옥천읍) (http://www.cbn1391.org)
충남 (3)	충청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224(성정동) (http://chonan.goodneighbors.kr/gnchonan)
	충청남도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384번길(취암동) (http://www.goodneighbors.kr/boryeong)
	충청남도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충청남도 홍성군 흥북면 상하천로 50 충남보훈회관 1층(신경리) (http://hongseong.goodneighbors.kr/gnhongseong)
전북 (3)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77(서서학동) (http://jeonju.goodneighbors.kr/gnjeonju)
	전라북도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112, 4층(갈산동) (http://iksan.goodneighbors.kr/gniksan)

지역	기관명	운영기관	설치장소(홈페이지)
전남 (3)	전라북도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41(향교동) (http://namwon.goodneighbors.kr/gnnamwon)
	전라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재단	전라남도 순천시 삼산로 92-5(용당동) (http://www.e1391.or.kr)
	전남서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635, 3층(석현동) (http://mokpo.goodneighbors.kr/gnmokpo)
	전남중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전라남도 나주시 예향로 4073, 2층(송월동) (http://jnjb.goodneighbors.kr/gnjnjb)
경북 (4)	경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우봉복지재단	경상북도 경주시 금성로395번길 24(성건동) (http://i1391.or.kr)
	경북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리스도의교육 수녀회	경상북도 안동시 밤적골길 20(울세동) (http://www.ad1391.org)
	경북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2번길 12, 3층 (대잠동) (http://pohang.goodneighbors.kr/gnpohang)
	경북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경상북도 구미시 문장로 110(도량동) (http://gumi1391.or.kr)
경남 (3)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인애복지재단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558(회원동) (http://www.kn1391.or.kr)
			(거제분소)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 13길 24, 2층 고현동주민센터 내(고현동)
			(양산분소)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209, 재향군인회관 3층(북부동)
	경남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인애복지재단	경상남도 진주시 모덕로 181번길 6(상대동) (http://www.gnw1391.or.kr)
김해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인애복지재단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85번길 8, 2층(부원동) (http://www.gh1391.or.kr)	
제주 (2)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재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로 59(노형동) (http://www.jj1391.or.kr)
	서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법인 제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731, 2층(서귀동) (www.sgp1391.org)

* 시·군·구에서 설치(안산, 용인, 시흥, 원주 등 4개소)

[붙임 2]

아동보호전문기관 관할지역 현황

(2016. 10월 현재)

지역	기관명	소재지	관할 시·군·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강남구	개별 사건 처리하지 않음
서울 (8)	서울특별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강남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서울특별시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동대문구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중구, 노원구, 중랑구
	서울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강서구	강서구, 양천구
	서울은평 아동보호전문기관	은평구	은평구, 종로구, 강북구
	서울영등포 아동보호전문기관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서울성북 아동보호전문기관	성북구	성북구, 도봉구
	서울마포 아동보호전문기관	마포구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서울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송파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부산 (4)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서구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남구, 사하구, 수영구
	부산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해운대구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기장군
	부산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북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부산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사하구, 수영구
대구 (3)	대구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중구	중구, 수성구
	대구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달서구	달서구, 남구, 달성군
	대구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북구	동구, 서구, 북구

지역	기관명	소재지	관할 시·군·구
인천 (3)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남구	부평구, 남구, 중구, 동구, 옹진군
	인천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부평구	서구, 계양구, 강화군
	인천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남동구	남동구, 연수구
광주 (2)	광주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서구	서구, 광산군
	빛고을 아동보호전문기관	남구	동구, 남구, 북구
대전 (1)	대전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중구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 (1)	울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중구	중구, 동구, 남구, 북구, 울주군
경기 (12)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원시	의왕시, 군포시, 안양시, 과천시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의정부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경기성남 아동보호전문기관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하남시
	경기고양 아동보호전문기관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 파주시
	경기부천 아동보호전문기관	부천시 원미구	부천시, 김포시
	경기화성 아동보호전문기관	화성시	화성시, 오산시
	경기남양주 아동보호전문기관	남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안산시 단원구	안산시
	경기용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용인시 기흥구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경기시흥 아동보호전문기관	시흥시	시흥시, 광명시

지역	기관명	소재지	관할 시·군·구
	경기평택 아동보호전문기관	평택시	평택시, 안성시
	수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원시	수원시
강원 (4)	강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춘천시	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강원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강릉시	강릉시,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원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원주시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강원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동해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충북 (3)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주시 청원구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충북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천시	제천시, 충주시, 단양군
	충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옥천군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충남 (3)	충청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천안시 서북구	세종특별자치시,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충청남도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논산시	논산시, 계룡시, 공주시, 서천군, 금산군, 부여군
	충청남도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홍성군	서산시, 보령시, 태안군, 홍성군, 예산군, 청양군
전북 (3)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주시 완산구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 완주군
	전라북도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익산시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전라북도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남원시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무주군
전남 (3)	전라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순천시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곡성군, 보성군, 고흥군
	전남서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목포시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지역	기관명	소재지	관할 시·군·구
	전남중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나주시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경북 (4)	경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주시	경주시, 경산시,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도군
	경북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안동시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
	경북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포항시 남구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청송군, 울릉군
	경북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구미시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경남 (3)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시, 밀양시, 양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함안군, 합천군, 의령군, 창녕군
	경남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진주시	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남해군,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김해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김해시	김해시
제주 (2)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제주시	제주시
	서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	서귀포시